

## ◎ 대통령령 제14,413호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개정령(11월 10일자)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2호 단서 · 제3호 단서 및 제4호 단서 중 “주관식 필기시험”을 각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하고, 동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능사 2급(또는 기능사)의 검정에 있어서는 제4호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 실업계고등학교 또는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평가한 성적을 자격검정 시험성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시기 ·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가.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하여 1년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한 실업계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1년간의 산학협동훈련을 받은 공공직업훈련시설의 훈련이수자 또는 이수 예정자

제35조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등이 제36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기술자격검정 등의 권한 및 보수교육의 실시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의 수수료는 이를 현금으로 당해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여 이를 제7항으로 하고, 동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종목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기술자격 검정의 권한은 당해 종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소관 기술자격검정의 권한(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기관에 위탁되는 권한을 제외한다)과 법 제8조 제1항, 법 제9조 제1항 · 제2항, 이 영 제27조의 3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전파통신기사 1급 · 전파통신기사 2급 · 전파통신기능사 · 전파전자기사 1급 · 전파전자기사 2급 및 전파전자기능사에 관한 체신부장관의 권한을 제외한다)은 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종목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기술자격검정의 권한은 이를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

에 의한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법인에게 위탁 한다.

제38조 중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대한상공회의 소 등 검정시행기관은”을 “제36조 규정에 의한 검정시행기관 등은”으로 한다.

제39조 제1항 중 “제36조 제5항”을 “제36조 제6항”으로 한다.

[별표 1]의 21. 산업용용란의 기사 1급란 및 기사 2급란에 각각 승강기기사를 신설한다.

[별표 2]의 3. 화공 및 요업란의 기능사 2급란중 유독물취급란과 하수처리란을 각각 삭제하고, 19. 서비스란 다음에 20. 환경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유독물취급	
20. 환경			* 환 경	

[별표 6]의 환경처장관란의 검정대상기술자격란 중, “유독물취급기능사 및 하수처리기능사”를 “유독물취급기능사 및 환경기능사”로 하고, 동표의 공업진흥청장란의 검정대상기술자격란중 “공정관리기사 1급 및 공정관리기사 2급”을 “공정관리기사 1급, 공정관리기사 2급, 승강기기사 1급, 승강기기사 2급 및 승강기 보수기능사”로 한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하수처리기능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처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영에 의한 환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환경처공고 제1994-77호

대기환경보전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법령안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환경처장관

### 대기환경보전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 개정취지

환경처공고 제1994-57호('94. 9. 8.)로 입법예고한 바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중 개정법률(안)에 덧붙여 현

행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제도를 일정규모 이하의 오염 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자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

## 2. 주요골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이하의 시설에 대하여는 신고를하도록 함.

### ◎ 환경처고시 제1994-94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유해성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994년 12월 5일

환경처장관

####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결과

일련번호	화학물질명	심사결과
94-151	2-옥세판온, 2-에틸-2-(히드록시메틸)-1,3-프로판디올, $\alpha$ -히드로- $\omega$ -히드록시 폴리(옥시-1,2-에탄디일)과 5-이소시아나토-1-(이소시아나토메틸)-1-3,3-트리메틸시클로헥산, 2-히드록시에틸 아크릴산 블락 중합체 2-Oxepanone Polymer with 2-ethyl-2-(hydroxymethyl)-1,3-propanediol, $\alpha$ -hydro- $\omega$ -hydroxypoly(oxy-1,2-ethanediyl) and 5-isocyanato-1-(isocyanatomethyl)-1-3,3-trimethylcyclohexane, 2-hydroxyethyl acrylate-blocked [85338-68-7]	-유독물에 해당안됨
94-152	(총칭명) 알킬 알켄일카르복시산과 아크릴로니트릴, N-치환된 메타아크릴아미드, 아크릴산의 중합물 Alkyl alkenylcarboxylate polymer with acrylonitrile, N-substituted methacrylamide and acrylic acid	-유독물에 해당안됨
94-153	(총칭명) 알킬 알켄일카르복시산과 알켄일 아세트산, 아크릴로나트릴의 중합물 Alkyl alkenylcarboxylate polymer with alkenylacetate and acrylonitrile	-유독물에 해당안됨
94-154	비스[4-[(5-클로로-2-히드로록시페닐)아조]-3-히드록시-N-페닐-2-나프탈렌카르복사미다토(2-)]철산(1-), 암모늄 나트륨 염 Ferrate(1-), bis[4-[(5-chloro-2-hydroxy-phenyl)azo]-3-hydroxy-N-phenyl-2-naphthalenecarboxylic acid midato(2-)], ammonium sodium salt [115706-73-5]	-유독물에 해당안됨

일련번호	화학물질명	심사결과
94-155	트리스, (2-에틸헥실) 4,4', 4''-(1,3,5-트리아진-2,4,6-트리일트리아미노)트리벤조에이트 Tns(2-ethylhexyl) 4,4', 4''-(1,3,5-triazine-2,4,6-triyltriamino)tribenzoate [88122-99-0]	-유독물에 해당안됨
94-156	1,3-비스(1-이소시아나토-1-메틸에틸)벤젠 1,3-Bis(1-isocyanato-1-methylethyl)benzene [2778-42-9]	-유독물에 해당안됨
94-157	(총칭명)클로로-[[디솔포아닐리노-[[히드록시술포닐옥시)-에틸술포닐]-아닐리노]-트라이진일아미노]-에틸아미노]-해테로폴리시클릭슬忿산의 염 Chloro-[[disulfoanilino-[(hydroxysulfonyloxy)ethylsulfonyl]-anilino]-triazinylamino]-ethyl-amino]-heteropolycyclic sulfonic acid and / or its salts	-유독물에 해당안됨
94-158	술폰화 지방산(C=12=18) 메틸에스터, 나트륨 염 Fatty acids(C=12=18), methyl ester, sulfonated, sodium salts	-유독물에 해당안됨
94-159	[[클로로메틸]옥시란, 2-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페놀의 중축합물과 2-프로펜산의 반응물]과 4-시클로헥센-1,2-디카르복시산 무수물의 반응물 4-cyclohexene-1, 2-dicarboxylic anhydride adduct of 2-propenoic acid adduct of polycondensate of (chloromethyl) oxirane, 2-hydroxybenzaldehyde and phenol [133324-68-2]	-유독물에 해당안됨
94-160	비스(2-에틸헥실)아민 Bis(2-ethylhexyl)amine [106-20-7]	-유독물에 해당됨 ○ 피부자극 성 물질로 사용시 피부와 접촉을 피하고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94-161	(총칭명)디하드로디옥소벤조푸란카르복시산, 알켄일푸란디온, 알킬리덴페닐렌옥시알콜과 벤젠카르복시산과의 중합물 Benzencarboxylic acid polymer with dihydro-dioxobenzofuran carboxylic acid, alkenylfuran-dione, and alkylidenephenyleneoxyalcohol	-유독물에 해당안됨 ○ 유독물에 해당안됨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환경처고시 제1994-97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0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4년 12월 13일

환경처장관

○ 배출부과금 관련 '94년도 가격변동지수

'94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43로 한다.

('95년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3.0723)

##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94년 12월 31일 이전의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가격변동지수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 ◎ 환경처고시 제1994-98호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지방환경관리)청별 관할 지역내 폐수처리업종 폐수수탁처리업에 대한 허가정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4년 12월 13일

환경처장관

## 폐수처리업종 폐수 수탁 처리업 허가정수

### ○ 폐수수탁처리업 허가정수

계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별 관할지역내							
	한 강	낙동강	영산강	금 강	대 구	원 주	전 주	
38	13	10	2	4	5	2	2	

##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고시폐지) 환경처고시 제91-9호(1991. 2. 8.)는 폐지한다.

## ◎ 환경처공고 제1994-79호

### 환경마크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환경마크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환경마크협회에서 심의·의결된 "환경마크인증 대상상품 및 인증기준"의 선정 및 개정내용을 환경마크제도운영규정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4년 12월 17일

환경처장관

No	대상제품	인증기준	인증서유	선정일자	비고
1	제생종이를 포	- 포장용원충제는 중량기준으로 - 폐지 100%이상 사용한 제품일것	신림보호	'94. 6. 11.	

No	내성제품	인증기준	인증서유	선정일자	비고	
1	제한 종이 및 그 제품류	- 폐지 100%이상 사용한 제품일것 - 꿀판지, 골판지상자, 용기류, 판지류 위생박업지, 위생용품은 중량기준으로 폐지를 90%이상 사 용한 제품일것 - 포장용지, 벽지, 봉투류, 용기 (상자, 컵, 접시), 관제품, 서적, 학용품, 일용품 등은 중량기준으 로 폐지를 50%이상 사용한 제품 일것 - 신문용지(쟁지), 종이보, 종이 밴드, 종이테이프는 중량기준으로 폐지 40% 이상을 사용한 제품일 것 - 인쇄용지, 필기용지, 서화용지, 정보용지 등은 중량기준으로 폐지 30% 이상 사용한 제품일 것(단, 도용인쇄 용지의 경우에는 10%이 상 사용할 것) - 해당 제품의 품질에 대한 한국 산업규격이 있을 경우 동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제생종이를 포함한 화장지류	- 제생용지 90% 이상을 포함하여 제조되어야 함 - 해당 제품의 품질에 대한 한국 산업규격이 있을 경우 동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신림보호	'93. 9. 2.		
3	페플라스틱	- 혼합제 및 강화제를 제외한 나 마지 원료의 중량기준으로 폐플라 스틱 제생원료를 80% 이상 사용한 성형제품일 것(단, 건축자재인 경 우는 60% 이상 사용할 것) - 해당 제품의 품질에 대한 한국 산업규격이 있을 경우 동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자원재활용	'94. 6. 11.		
4	염화불화탄소(CFCs)를 사용하지 않는 스프레이류	- 오존총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령 별표의 Ⅰ군 및 Ⅱ군에 속하는 물 질을 분사제로 사용하지 않은 것 으로 다음사항을 만족하여야 함 ○ 악사법의 규정에 의한 화장품 (미리옹스프레이, 면도용 포장)으 로서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일 것 ○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품 질검사를 받은 제품(방취용 스프 레이로 방향제품) 또는 품질검사 가 면제된 제품(공업진흥청고시 공산품품질검사면제대상 등에 관 한 규정일 것)	지구오존총 보호	'93. 6. 2.	'94. 6. 11. 폐 지	
5	유아용 천기저귀	- 기저귀 제질은 면이 100%이어 야 함	제사용가 능		제설정	

No	대상제품	인증기준	인증서유	선정일자	비고	No	대상제품	인증기준	인증서유	선정일자	비고
6	비석면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광증백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li> <li>- 공업진흥청고시 "유해물질함유 성유제품 품질기준" 중 기저귀류에 대한 유해물질 규제사항을 만족할 것</li> <li>- 사용중 쉽게 재봉술기등이 풀리거나, 실이 뽑히지 않을 것</li> <li>- 50회 이상 사용 가능할 것</li> <li>- 해당 제품의 품질에 대한 한국 산업 규격이 있을 경우 동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li> </ul>	석면을 사용할 수 없음	석면을 사용하지 않음	재선정	11	폐면, 폐섬유를 이용한 제품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전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거리감지 및 전자작동을 위한 전원의 전압은 24volt를 넘지 않아야 함</li> <li>- 해당 제품의 품질에 대한 한국 산업 규격이 있을 경우 동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li> </ul>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면, 폐섬유(단, 광물성섬유는 제외함)를 80% 이상 사용하여 제조할 것	자원 재활용	대상제품명 및 인증기준 변경, 재선정
7	부엌 싱크대용 걸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이닝 또는 패드의 마모되는 부분 및 단열층 부분에는 석면을 사용할 수 없음</li> <li>-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분류된 발암성 성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함</li> <li>- 해당 제품의 품질에 대한 한국 산업 규격이 있을 경우 동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li> <li>-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검사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동 기준에 적합할 것</li> </ul>	물을 깨끗이	물을 깨끗이	인증기준변경, 재선정	12	폐식용유를 이용한 재생비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누의 원료로서 폐식용유를 전유지의 50% 이상 사용할 것</li> <li>- 해당 제품 품질에 대한 한국 산업 규격이 있을 경우에는 동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li> </ul>	비누의 원료로서 폐식용유를 전유지의 50% 이상 사용할 것	자원 재활용	인증기준변경 재선정
8	미개부착형 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걸름망의 폐시는 1.5mm 이하일 것(여기서 폐시란 체눈의 크기를 말함)</li> <li>- 망체형의 경우 선의 지름은 체눈의 크기와 동일하거나 그 이하 이어야 하고, 판체형의 경우 체눈의 중심거리는 체눈크기의 3배이 하일 것</li> <li>- 해당 제품의 품질에 대한 한국 산업 규격이 있을 경우 동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li> </ul>	마개가 멀어지지 않음	마개가 멀어지지 않음	대상제품명 변경, 재선정	13	폐식회를 이용한 벽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석회 또는 폐석회 슬러지 90% 이상을 사용하여 제조할 것</li> <li>- 해당 제품 또는 유사제품에 대한 한국 산업 규격이 있을 경우에는 동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li> </ul>	90% 이상을 사용하여 제조할 것	자원을 절약함	'93.9.2.
9	무표백·무염색 타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캔의 마개(마시는 구멍)가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될 경우 음료캔의 본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것</li> <li>- 음료캔의 크기가 다르더라도 상표가 동일하면 같은 상품으로 인정함</li> <li>- 식품위생법 또는 기타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제품을 담는 용기일 것</li> <li>- 소재가 100% 목면인 타올이며, 무표백·무염색인 것</li> <li>- 형광증백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li> <li>- 해당 제품의 품질에 대한 한국 산업 규격이 있을 경우 동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li> </ul>	무표백·무염색	무표백·무염색	재선정	14	폐유리를 이용한 건축자재(유리 대리석, 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유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 이상 또는 부피기준으로 원료의 70% 이상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일 것</li> <li>- 해당 제품 또는 유사제품에 대한 한국 산업 규격이 있을 경우에는 동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li> </ul>	폐유리를 원료의 50% 이상 또는 부피기준으로 원료의 70% 이상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일 것	자원을 절약함	'94.6.11.
10	물질약형 수도꼭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즉각 자동적으로 단수되어야 함</li> </ul>	물을 절약할 수 있음	물을 절약할 수 있음	'94.6.11.	15	폐타이어 등을 이용한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타이어, 폐우레탄 또는 폐고무를 사용한 단순가공 제품으로서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 이상 사용한 제품일 것</li> <li>- 사용중 마찰에 의해 중금속 성분이 노출되지 않을 것</li> <li>- 해당 제품 또는 유사제품의 품질에 대한 한국 산업 규격이 있을 경우에는 동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li> </ul>	폐타이어, 폐우레탄 또는 폐고무를 사용한 단순가공 제품으로서 원료의 50% 이상 사용한 제품일 것	폐기물 발생 감소에 기여함	'94.6.11.
						16	비석면 클러치 폐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러치폐이상의 마모되는 부분 및 단열층 부분에는 석면을 사용할 수 없음</li> <li>-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분류된 발암성 성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함</li> <li>- 해당 제품의 품질에 대한 한국 산업 규격이 있을 경우에는 동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li> <li>-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li> </ul>	석면을 사용하지 않음	석면을 사용하지 않음	'93.9.2.

No	대상제품	인증기준	인증서유	선정일자	비고
17	교체형 전구식 형광등	검사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동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유통되고 있는 백열전구에 비하여 전력 소모량을 75% 이상 절감 할 것(50lm / W이상의 효율이 있어야 한다) - 전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장치에 별도의 설치와 부속품이 없이도 전구대신 사용할 수 있을 것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품목일 것 - 소비전력에 대해서는 공인기관의 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함 - 해당제품의 품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이 있을 경우에는 동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전력소비량 75% 이상 절감	'93.9.2.	
18	천장바구니	- 체결은 면 60%이상이어야 함 - 형광증백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 공업진흥청고시 “유해물질함유섬유제품 품질검사기준”의 유해물질규제사항을 만족하여야 함 - 질기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크기는 감자, 양파 등을 5kg이상 (인장강도 KS K 0520, 그레브법에 의한 5kgf) 담을 수 있어야 함 - 김에서 세탁이 가능하여야 함	비늘쓰레기 감소에 기여함	'93.9.2.	
19	폐식분을 이용 한 건축자재	- 폐식분을 무게비로 40%이상 사용하여 제조할 것 - 해당제품 또는 유사제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만족해야 함	자원절약	'93.12.9.	
20	생분해성 해상 용 2Cycle 엔진 오일	- 생분해도는 CEC(구주규격자문위원회)규격 L-33-T-82에 규정한 방법으로 80%이상일 것 - 해당제품 또는 유사제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만족해야 함	자연에서 분해가 잘 됨	'93.12.9.	
21	생분해성 유압 작동유 (건설장비, 해상유압장비, 농기계 등에 사용되는 야외용 유압작동유)	- 생분해도는 CEC(구주규격자문위원회)규격 L-33-T-82에 규정한 방법으로 80%이상일 것 - 어독성 시험을 하여 LC 50>2.0mg/l 이어야 함 - 석유사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석유제품 품질기준” 중 유압작동유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해당제품 또는 유사제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만족해야 함	자연에서 분해가 잘 됨	'93.12.9.	
22	무기성 폐수 처리	- 폐수처리오리를 무게비로 8%이	자원 재활용	'94.3.15.	

No	대상제품	인증기준	인증서유	선정일자	비고
	리오니리를 이용 한 벽돌	상 사용 제조할 것 - 사용중 유해 중금속성분이 노출되지 않을 것 - 해당제품 또는 유사제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할 것	용		
23	폐목재를 이용 한 팔렛트	- 폐목재는 무게비로 80%이상 사용하여 제조할 것 - 사용중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수지의 원료가 노출되지 않을 것 - 해당제품의 품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이 있을 경우에는 동 기준에 적합할 것	자원 재활용	'94.3.15.	
24	절수형양변기	- 1회 사용시 6리터 이하의 물로 처리하여야 함 - 해당제품의 품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이 있을 경우에는 동 기준에 적합할 것	물 절약	'94.6.11.	
25	지유황등유	- 황 함유량이 50ppm이하로 유지될 것 - 해당제품은 석유사업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대기오염 저감	'94.6.11.	
26	소각장재물 등을 이용한 건축자재	- 석탄제, 황제, 분제, 폐주물사, 연탄재, 폐도자기, 폐타일 등을 중량비로 50%이상 사용할 것 - 해당제품의 또는 유사제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이 있을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자원재활용	'94.11.5.	
27	고로슬래그를 이용한 고로시멘트	- 고로슬래그를 45%이상 사용할 것 - 해당제품의 품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이 있을 경우에는 동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자원재활용	'94.11.5.	
28	빈캔 회수기	- ‘빈캔 회수기’는 투입된 빈캔을 자동적으로 분별, 압축,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 ‘자동식회수기기’와 수동식 압축분별 기능을 가진 ‘수동회수기기’로 나누어 설사한다. - 자동식회수기기는 알미늄캔과 철제캔을 분별하는 기능과 캔의 압축 및 저장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장치를 갖추되, 이물질(동, 병 등) 투입시 자동적으로 분별·배출하는 기능을 갖출 것 - 수동식회수기기는 인력으로 쉽게 압축할 수 있고, 알미늄캔과 철제캔을 분별하는 기구를 갖출 것 - 캔의 제작을 5분의 1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 - 인화성물질을 담은 용기를 압축	폐기물감량		신규추가

No	대상제품	인증기준	인증사유	선정일자	비고
29	제보충용기 또는 부품	할 경우에는 타공(打孔)장치를 갖출 것 - 자동식 회수기는 제품의 수리 점검에 문제가 없도록 A/S 체계를 갖출 것 - 해당 제품의 품질에 대한 한국산 업규격이 있을 경우에는 동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제보충용기(부품)라 함은 유리 또는 플라스틱 등의 용기(부품)를 감소させて 이용하기 위한 간이용기(부품)를 말함 - 제보충용기(부품)의 제질은 종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표면에 분리수가 및 재활용에 관한 안내문을 명기할 것 - 제보충용기(부품)의 중량은 본체 용기 중량의 4분의 1이하이어야 함 - 포장비용 절감액만큼 이를 소비	포장폐기물 감소	신규추가	
30					자 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 상품에 환경마크를 표기할 때에는 '포장폐기물 감소'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제품의 내용물이 환경마크와 무관하다는 점을 명기할 것 - 해당 제품의 품질에 대한 한국산 업규격이 있을 경우에는 동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대변과 소변시 각각 배출되는 물의 양을 달리하여 소변세척시 물의 소비량을 30% 이상 절수 할 수 있을 것 - 사이렌의 마개부위의 제질을 PVC 등 물에 썩지 않는 제질로 만들어 자원의 낭비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인 제품일 것 - 해당 제품의 품질에 대한 한국산 업규격이 있을 경우에는 동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 회보 협력업체 명단 ◆

- 강남산업(주)(휠터백)
- 남경어드밴스(주)(산화장치)
- 대양상사(계측기류)
- 동광환경(주)(방지시설업)
- 동아계측기기(탈수기 / 계측기)
- 동양기전(주)(퇴비화장치)
- 동양나이론(주)(약품)
- 동양화학(주)(방지시설업)
- 럭키디씨실리콘(주)(소포제)
- (주)보명플랜트(방지시설업)
- 블루웨일스크린(스크린제작)
- (주)삼천리(방지시설업)
- 새한환경(주)(방지시설업)
- 서울엔지니어링(전기집전기)
- (주)세화환경(방지시설업)
- 송원산업(주)(옹집제)
- 씨스텍엔지니어링(환경기기)
- (주)그린기술산업(방지시설업)
- 엔바트로닉스(주)(유량계)
- 연합기연(필터 / 소각로)
- 영일화학공업(주)(중금속포집제)
- 웅진과학무역(실험실기기)
- 원엔지니어링(주)(소각로)
- 유공유체산업(주)(여과포)
- 유니손산업(주)(집전기 / 필터)
- (주)유니온(여과기)
- 유천엔바이로(필터류)
- 이양화학(주)(미생물처리제 / 옹집제)
- 일진환경개발(탈수기)
- (주)정엔지니어링(TMS / 계측기)
- (주)주남트레이딩(탈수기류)
- 진도종합건설(주)(소각로)
- 천세산업(주)(탈수기 / 전극봉)
- (주)키스트엔지니어링(수처리기기)
- 태기공업(주)(방지시설업)
- (주)태훈환경ENG(방지시설업)
- 하이테크과학상사(계측기기)
- 한국바스테(옹집제주입장치)
- (주)한국EP(집전기)
- 한국3M(주)(흡착제)
- 한미브로와(블로워)
- 한성엔지니어링(방지시설업)
- 한솔화학(주)(옹집제)
- (주)한수수처리약품
- 호정엔지니어링(탈수기)
- 화랑환경(약품)

◇나다순